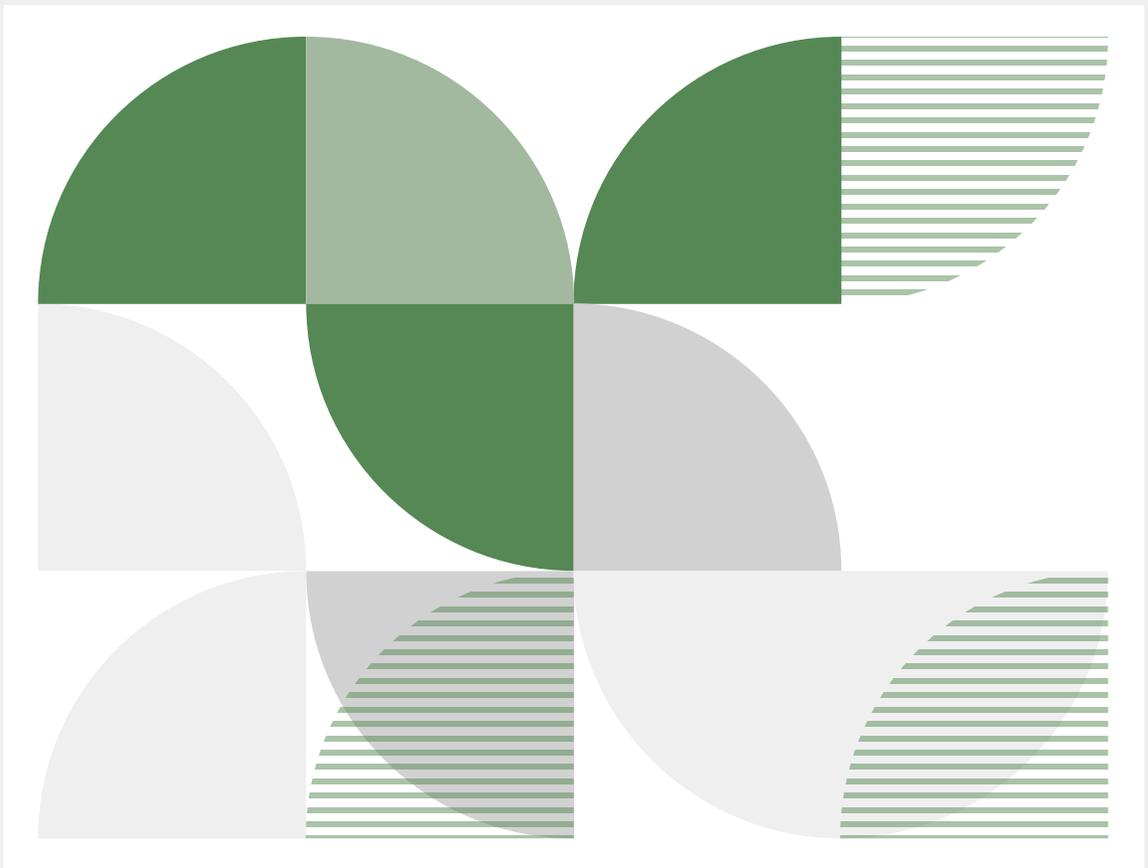


모빌리티인문 정책제안 22-2(통권 4호)

동물의 임모빌리티, 동물원의 윤리적 문제와 개선 방향



Contents

목차

I. 제안 배경	1
1. 동물원의 개념과 역사	1
2. 동물원의 현황과 문제점	3
II. 동물의 감금과 윤리, 나아가야 할 방향	9
1. 동물의 감금과 윤리	9
2. 동물원의 기능과 정당성	10
III. 해외 사례	14
1. 일본의 동물원 법제와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의 활동	14
2. EU 동물원 지침	16
3. 미국 시애틀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Woodland Park Zoo)	17
4. 스웨덴 스키프 동물원과 노르덴스 아크 동물원	17
5. 영국 요크셔 야생동물공원(Yorkshire Wildlife Park)	20
6. 오스트레일리아 테즈메이니아 데빌 언주(Tasmanian Devil Unzoo)	21
7. 시사점	22
IV. 대안과 정책 제언	24
1. 동물원의 폐지인가 보존인가	24
2. 동물보호와 헌법 규범	24
3. 전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 조항의 정비	25
4. 동물원 환경의 제고를 위한 종별 기준 제시	28
5. 동물원 기능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	29
● 참고문헌	31



〈초록〉

동물의 임모빌리티, 동물원의 윤리적 문제와 개선 방향

18세기에 근대적 의미의 동물원이 처음 설립된 이래 동물원은 20세기 초까지는 대중들의 오락 시설로 기능하였으나 이후 연구, 종의 보전 등을 새로운 기능과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민간 동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야외 방사장을 갖추지 않은 실내 동물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카페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동물원이나 소규모 체험 동물원 등이 난립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 개정된 「동물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원 이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며, 전시 부적합종의 신규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동물원이 동물의 임모빌리티를 강제하고, 관람객이 동물의 관람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에 그 운영을 의존하는 한, 동물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윤리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존하는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물원이 동물보호, 교육, 종의 보전을 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해외의 선진적인 사례는 보전 사업이 개별 동물원의 예산, 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있는 기관의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동물원은 동물의 활동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능한 한 본래 서식지의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 단지 동물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생활하는 환경과 습성 자체에 주목하게 하는 전시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동물원의 상황을 개선하고 그 기능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통한 동물보호의 규범화, 전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 조항의 정비, 동물원 환경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종별 기준 제시, 개별 동물원의 상황에 따른 전문성의 특화, 종의 보전을 위한 연계, 먹이 주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대체할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Keywords

동물원, 동물의 임모빌리티, 동물원의 기능, 동물복지, 동물원수족관법

〈Abstract〉

Animals' Immobility: Ethical Issues Concerning Zoo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zoo, in its modern sense,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18th century. It served as a public entertainment facility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when it added new functions and purposes such as research and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Meanwhile, most of the zoos in Korea are private, including many indoor zoos without outdoor fields. In addition, pseudo zoos and mini petting zoos operating in the form of cafés have been popping up, causing various problems.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nd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which were revised in 2022, will convert the zoo registration system into a permit system, prohibit the exhibition of wild animals in places other than zoos, and prohibit newly possess species that are not suitable for exhibition. However, as zoos that enforce animal immobility, rely on, for the most part, the costs that spectators pay for viewing animal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zoos are challenging to solve and even ethically unacceptable. Therefore,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mprove the welfare of existing zoo animals;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of functions of zoos so that they can mainly take charge of animal protection, education, and conservation of species. Examples of overseas zoo and aquarium associations or advanced zoos suggest the following points:

- Species conservation projects are carried out based on responsible institutions' plans, considering individual zoos' budgets, personnel, scale, etc.
- Zoos should ensure that the animal's activity area is sufficient and that the environment is as similar to the original habitat as possible.
- The exhibition techniques that draw attention to the environment in which animals live and animals' habits, not solely displaying animals, are to be used in the zoo.

It is necessary to standardise animal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develop provisions for punishing cruelty to exhibited animals, and present species-specific standards for improving the current situation of zoos and transforming their functions. Also, other aspects such as the specialis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zoo, the collabor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pecies,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replace experience programs such as feeding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zoos, immobility of animals, function of zoos, animal welfar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동물원의 현황과 문제에 관하여 선행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신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이형주 대표
님께 감사드립니다.

I. 제언 배경

1. 동물원의 개념과 역사

동물원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나 로마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당시 귀족이나 왕실에서는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희귀하고 구하기 힘든 야생동물을 포획, 수집하여 살아있는 동물들을 전시하는 시설을 갖추었음. 이러한 형태의 동물원(menagerie)은 이후 근대적 의미의 동물원이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까지 유지되었음.



〈그림 - 1〉 1800년대 초반 영국에서 유행했던 이동 미네저리
(출처: Art UK)

이후 18세기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에 근거한 근대적 동물원이 설립되었는데,¹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오스트리아 빈의 쇤브룬 동물원(Tiergarten Schönbrunn, 1752년)이 있고,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된 동물원으로는 파리의 자당 뒤 플랑 동물원(Ménagerie, Le zoo du jardin des plantes, 1794년), 민간 동물학회가 설립한 런던 동

1 여기서 과학에 근거하였다는 것은 동물을 단순히 포획하여 전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 미네저리와는 달리, 생태학, 영양학, 수의학 등을 기초로 하여 분류학, 동물학, 행동학 등의 정보를 발신한 것을 의미한다: 橋川央著, 打越綾子編, 〈動物園動物の存在と動物園がやっていること〉, 《人と動物の関係を考える》, ナカニツヤ出版, 2018, 155頁.

물원(London Zoo, 1826년) 등이 있음. 동물원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미국 동물원수족관협회(American Zoo and Aquarium Association, AZA)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전 세계 1만 개 이상의 동물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됨.

근대적 동물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20세기 초까지 동물원은 관광 명소나 대중들의 오락을 위한 시설로서, 동물을 전시하기 위해 가두어두는 “쇼케이스의 역할”을 담당하다가,² 근래 오락 외의 새로운 기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동물원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시도됨. 동물원에 관하여 국내 법률과 유럽 연합의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그 개념과 기능을 정의하고 있음.

규정	내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 제1호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U 지침 ³ 1999/22/EC	Article 1 이 지침의 목적은 (...) 야생동물군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존에 있어 동물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Article 2 이 지침의 목적상 “동물원”이란 1년에 7일 이상 대중에 전시하기 위해 야생종 동물을 보유하는 모든 영구적 시설을 의미한다.

〈표 - 1〉 동물원의 정의와 기능

또한 전 세계 다수의 동물원과 수족관을 회원으로 둔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WAZA)는 “동물과 그 서식지 보호와 보존”을 협회의 목적으로 두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동물을 인간의 오락을 위한 수집과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비판과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새로운 기능과 목적을 통해 동물원의 존립과 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오락과 전시 위주의 동물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그러나 이와 같은 동물원의 역사와 개념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통틀어 대다수의 동

2 Miranda, Rafael, et al., “The Role of Zoos and Aquariums in a Changing World,” *Annual Review of Animal Biosciences* 11, 2023, 288.

3 유럽 연합의 입법 방식 중 하나로, 회원국은 유럽 연합이 지침(Directive)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입법화할 의무를 부담한다.

물원은 “동물의 전시”와 “동물의 임모빌리티”를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음. 동물권,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동물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동물원의 존재 가치를 윤리적으로 고찰해 보고, 현재 운영되는 동물원의 실질적 문제를 짚어 본 다음 향후 동물원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2. 동물원의 현황과 문제점

1) 동물원 및 동물 전시시설의 현황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 동물원의 개수는 총 110개이고, 그중 민간 동물원이 90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공영동물원	민간동물원	소계
서울	1	4	5
부산	1	4	5
인천	1	5	6
대전	1	3	4
광주	1	1	2
대구	1	6	7
울산	1	4	5
세종	1	2	3
제주	1	11	12
경기	1	21	22
강원	-	7	7
충북	1	1	2
충남	2	3	5
전북	2	1	3
전남	3	7	10
경북	-	6	6
경남	2	4	6
총 계	20	90	110

〈표 - 2〉 전국 동물원 현황
(출처: 환경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원 중에는 실내 동물원이 46개로 절반이 넘는 비중(51.2%)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수가 야외 방사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동물원수

족관법」에 따른 등록 동물원⁴ 외에도,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주로 앵무새, 라쿤, 고양이, 개 등의 동물을 보유하고 전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야생동물 카페는 2020년 현재 서울에서 1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야외 방사장을 확보한 시설이 전무하고 관리 인원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 시설들은 동물원 등록이 아니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등으로 등록되어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국가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 위생, 동물복지 등의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⁵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정 「동물원수족관법」(2022. 12. 13. 개정, 법률 제19086호)은 기존의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그 허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제8조 이하) 향후 실내동물원이나 체험동물원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동물원수족관법」과 같은 날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이하 “야생생물법”)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의 전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제8조의3), 현재 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야생동물 전시 시설도 점차 폐지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법률적 정비는 정책의 마무리가 아닌 시작으로, 동물원 개선과 동물보호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심한 이론적·실증적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동물원과 수족관의 국가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동물원수족관법」이 2017년 제정 이래 2023년 현재 총 4회의 개정(그중 내용 변경 없이 타법개정에 따른 개정은 1회)을 거친 것도 이와 같은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2) 변화의 움직임,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들

■ 전시동물에 대한 법률의 변천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원이 개원한 이래 10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4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나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현행법에 따라 일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동물원 설립이 가능하다.

5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서울시 야생동물 전시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2020, 37쪽 이하.

지 동물원·수족관의 설립 및 운영은 그 주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었음. 2017년 동물원과 수족관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동물원·수족관의 등록, 동물원 안전관리 등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것으로, 동물사육에 적합한 시설이나 환경 기준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여 “동물복지가 빠져 있는 부실한 입법”⁶이라는 평가를 받음. 이러한 제정법의 미비점은 현행 「야생생물법」이 일부 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맞물려, 체험 동물원,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형적인 산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동물원수족관법」은 제정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8년 개정(법률 제15651호)을 통해 5년 단위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나 여전히 동물원의 전시 동물에 대한 복지 규정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었음.

2022년 11월 24일 개정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시 동물의 처우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특히 「동물원수족관법」은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그간 지적되어 온 동물복지에 관하여 다양한 조항을 신설하고, 동물원의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다는 의미가 있음.

법률	주요 개정 내용
동물원수족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원·수족관 설립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제8조) ■ 동물원·수족관 허가와 관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심사판제의 도입 (제12조) ■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관리 강화 (제16조~제23조) ■ 허가 시설 외에 보유 동물의 이동 전시 금지 ■ 오락 또는 흥행 목적으로 보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등을 가하는 행위의 금지 ■ 고래류와 같이 전시 부적합종의 신규 보유 금지 (이상 제15조)

6 함태성, <동물 전시의 윤리적·법적 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스왈질랜드 일레븐 사건(Born Free USA v. Norton case)을 글감으로 하여>, 《환경법연구》 39(3), 2017, 454쪽.

야생생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 규정 신설 (제2조 제4호)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 등의 원칙적 금지 (제22조의2, 제22조의4) ■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제8조의3) ■ 유기 또는 방치 야생동물보호시설의 설치 (제8조의4)
-------	---

〈표 - 3〉 개정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의 주요 내용

2022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전시 동물의 복지를 위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정 자체가 전시 동물의 실질적 복지 구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하위법령을 통해 동물복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 등이 요청됨.

■ 불편하지만 생각해야 할 문제들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은 동물원 전시 동물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물원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곤란함. 동물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에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동물원이라는 시설은 “동물의 임모빌리티”, “전시를 통한 이윤 추구”를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적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동물복지와 동물권 향상에 있어 기본적인 한계를 내재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물에 대한 복지의 향상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물의 임모빌리티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가에 관한 논의로 진행되어야 함.

동물원수족관협회의 인증 vs. 동물복지

이미 WAZA를 비롯한 전 세계의 동물원 관련 협회들은 종의 보전, 동물복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동물복지 향상과 동물권의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종의 보존, 교육 등 새로운 기능의 모색과 그 발전을 통해 동물원 존립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등가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가치들을 동시에 표방하고 있음. 그중 미국의 동물원수족관협회(AZA)는 동물원 인증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에버랜드와 서울대공

원이 AZA의 인증을 획득하였음. 그러나 인증의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오히려 동물복지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예를 들어 서울대공원은 AZA의 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들이 서식하는 환경을 지적받자, 해당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수준의 유사동물원에 알락꼬리여우원숭이들을 양도하거나,⁷ 인증을 받은 후에는 종 보전 가치가 낮은 침팬지 2마리를 복지 수준이 열악한 해외 동물원으로 반출을 시도함.⁸ 또한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소재한 동물원에서는 기린을 공개적으로 도살하여 사자의 먹이로 주는가 하면, 사자 네 마리를 살처분하였음. 이에 대하여 해당 동물원과 유럽 동물원수족관 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EAZA)는 도살된 기린과 동일 유전자 기린이 너무 많아 근친 교배의 위험성이 있고, EAZA의 규정상 EAZA 회원이 아닌 시설로 보낼 수 없으며, 사자의 먹이로 주는 퍼포먼스는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⁹ 이는 생물 다양성의 확보와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유럽혈통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EAZA의 입장에는 부합하는 일일지는 모르나, 종 보전과 생물 다양성 확보라는 명목 아래 '마리우스'라 이름 붙여진 구체적이고, 독립적이며, 고유한 해당 개체는 생명체로 대우받지 못했음. 이와 같이 기능적 전환을 시도하는 동물원과 동물원수족관협회의 움직임이 오히려 동물들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음.

동물원 관람객의 유치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

동물원 단체가 표방하는 것처럼 동물원의 주목적과 기능을 종의 보전, 교육 등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관람객의 입장료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실질적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의 약 92%가 민간 동물원으로서 대다수의 동물원이 이와 같은 수익 구조를 띠고 있음. 일례로 팬데믹의 장기화는 관람객의 입장 - 동물원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운영에 큰 타격을 입혔고, 이것이 동물들이 흑한과 굶주림 속에 방치되는 결과를 낳은 사례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음.

7 (사)동물복지어웨어, <[성명서] 쇼핑물 실내체험동물원으로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양도한 서울대공원에 동물 회수와 공영동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2020 참조.

8 김지숙, <'학대' 체험 동물원 넘어갈 위기, 침팬지 광복·관순이 '반출 철회'>, 한겨레신문, 2022. 8. 11.

9 Dickie, Lesley, "Why Copenhagen zoo was right to cull giraffe," CNN, 2014. 2. 10. <https://edition.cnn.com/2014/02/10/opinion/giraffe-cull-argument-for/index.html> (2023. 1. 9. 최종방문).



〈그림 - 2〉 흑한에 방치된 원숭이
(출처: 금빛실타레¹⁰ 블로그)



〈그림 - 3〉 폐사된 염소
(출처: 비글구조네트워크)

비단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물원의 운영을 상당 부분 관람객의 입장료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당연히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될 수밖에 없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긴 하였으나 단순한 금지규정만으로는 인기 있는 개체의 확보와 전시,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

10 대구 소재 동물원에서 경영난으로 방치된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구조를 위해 노력한 블로거.

II. 동물의 감금과 윤리, 나아가야 할 방향

1. 동물의 감금과 윤리

인간 생활의 관계에서 동물을 철학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범주의 허용 여부를 가르는 잣대로 기능할 수 있음. “임모빌리티”를 핵심으로 하는 동물원에서 동물을 전시하고 행사에 이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에 관해서도 기존 동물 철학과 윤리에 비추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음. 일찍이 데카르트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은 영혼과 정신이 없어 그 육체는 기계와 다름없다”는 동물관¹¹에 따르면 동물이 타인의 소유가 아닌 한 무제한적 이용이 정당화되므로, 동물원은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됨.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동물관은 거의 지지받지 못하고 있고, 동물에 대하여 친화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가는 전 세계의 법적·제도적 동향과 일치하지 않으며, 기능의 전환을 통하여 존속을 도모하는 현재의 동물원의 입장과의 부합하지 않음.

데카르트의 견해와는 반대로, 동물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입장은 톰 리건(Tom Regan)을 비롯한 동물권리론자들로서, 이들은 동물의 권리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¹² 이 견해에 따르면 동물들도 삶의 주체성(subjectivity of life)을 가지며, 삶의 주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은 각기 본래적 가치(inherent value)를 지님.¹³ 이렇듯 리건을 포함한 동물권리론자들은 동물 자체의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여 고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함. 따라서 육식도, 동물실험도,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¹⁴ 이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생존 또는 건강이라는 중요한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의 유희를 위한 현재 동물원은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설령 종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와 같은 기능의 전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물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

11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2020, 207쪽 이하.

12 유선봉, 〈동물권 논쟁: 철학적, 법률적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0(2), 2008, 445쪽.

13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s*,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246.

14 리건의 동물권리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최훈, 《동물을 위한 윤리학》, 사월의책, 2015, 41쪽 이하 참조.

하는 방식, 즉 동물의 임모빌리티를 담보로 하는 한 허용될 수 없음. 특히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도태를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하는 행위는 더더욱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음.

또 다른 윤리적 입장은 피터 싱어(Peter Singer)로 대표되는 동물해방론으로, 동물해방론은 어떤 존재가 쾌고감수능력(sentience)을 지니고 있다면 동물의 이익도 사람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다만 이 이론은 공리주의에 기반하여 침해된 동물의 이익보다 그 침해로 얻게 되는 인간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면 동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 이 이론에 비추어 동물원의 정당성을 판단하자면, 우리가 동물의 임모빌리티를 강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러한 이익이 동물에 대한 강제적 임모빌리티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중한 이익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즉, 동물원을 통해 얻는 인간의 쾌락이나 유익함의 총합이 동물원 내 소수의 동물이 받는 고통의 총합보다 크다면 동물원의 존립은 정당화될 수 있음. 만일 동물원의 주요기능을 “오락”에 국한한다면, 인간의 일시적 오락을 위해 동물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습성을 동물의 전 생애에 걸쳐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음.

동물권리론이든 동물해방론이든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한, 현존하는 동물원은 그 존립의 윤리적 정당성을 갖추기가 어려움. 다만,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인간의 이익이 동물의 고통보다 현저하게 우위에 있게 된다면 적어도 동물해방론의 입장에서는 정당화의 여지가 있음.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동물원이 과연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동물원의 기능과 정당성

1) 오락

동물원의 역사와 연혁에 비추어 보면, 동물원은 부와 권력의 과시(미네저리) - 순수한 오락(19세기) - 오락, 교육, 연구(20세기) - 오락, 교육, 연구, 종의 보전(21세기)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 이는 동물을 오락적 수단으로 전시하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확산함에 따라 동물원의 존립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임. 현재 다수의

동물원과 동물원 관련 협회는 동물원의 기능을 “오락, 교육, 연구, 종의 보전”으로 대별하고 “오락”이 “교육”이나 “연구”라는 고차원적 목적에 수반하는 부차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동물원이 야생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이 아닌 도심이나 그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점,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절반 가량이 실내 동물원으로서 오히려 야생환경에 부적합한 비교육적 환경에 놓인 점, 동물원에서의 연구나 종의 보전을 실시할 만한 인프라나 인력이 극히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현재 한국 동물원의 사실상 기능은 “오락”임을 부인할 수 없고, 여전히 가장 커다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요소임.

2) 교육

과거 동물원에서 행해지던 교육적 요소는 동물에 대한 지식의 문답이 중심이 되었으나, 현재에는 동물의 서식 환경이나 멸종 위기, 동물보호 등 환경 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동물의 관람이나 체험과 연계된 경우가 많음.¹⁵ 그러나 동물원의 야생동물은 야생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 생태적 습성과 서식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임모빌리티가 강제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에 놓인 동물을 관람하는 것은 동물과 해당 종에 대한 이해와 공감 증진에 기여할 수 없음.

또한 동물원의 동물들은 먹이를 찾거나 새끼를 돌보거나 다른 개체와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것과 같은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 지루해하거나 강박,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 같은 상태를 보이므로 올바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야생동물을 애원화할 수 있다는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음.

동물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교육에 반드시 동물의 전시와 관람이 수반될 필요는 없고, 서식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동물원의 확고한 존립 근거로 작용하기 어려움. 오히려 동물의 임모빌리티를 전제로 한 교육 활동은 동물의 본래적 가치와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모순 관계에 놓여 있음.

15 橋川央著, 打越綾子編, 上掲書, 163~164頁; 서울대공원, 〈교육 프로그램〉,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https://grandpark.seoul.go.kr/edu/program/list/ko/S001005001002.do> (2023. 1. 11. 최종방문).

3) 연구

동물원의 또 다른 존립 근거로서 “연구”의 기능이 제시되는데, 즉 동물의 사육을 통하여 동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번식 조건 등에 관한 데이터 확보 및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동물원의 연구 기능은 연구인력의 미비,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그 기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¹⁶ 동물원의 동물은 야생의 서식지가 아닌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으므로 동물 행동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

경우에 따라 동물의 분뇨, 혈액, 사체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연구기관에 제공하거나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으나, 이는 동물을 수집, 사육하는 시설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 이것이 동물원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없음.

일례로 서울대공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연구를 위한 기구로 “동물실험윤리심의기구”와 “과학연구심의기구”를 두고 있는데, 두 기구는 동물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윤리와 연구의 창의성 및 적절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는 현재 동물원의 여건상 적어도 외부의 연구시설이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연구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적절한 독립 근거가 될 수 없음.

4) 종 보전

종의 보전은 가장 최근에 동물원의 기능 중 하나로 추가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교육, 연구 등의 활동도 생물 다양성의 확보와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의 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과 연계됨.¹⁷ 그러나 종의 보전 역시 동물의 임모빌리티와 전시가 전제되는 한, ① 전시동물은 멸종위기종 동물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 ② 서식지의 복원 없는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은 그 의미가 희박하다는 점, ③ 동물원이 서식지 근처가 아니라 대부분 도시에 위치하고, 보전 대상도 서식종 위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동물원의 존립 근거로 정당성을 갖추기 어려움.

16 橋川央著, 打越綾子編, 上掲書, 167頁.

17 Miranda, Rafael, et al., op.cit. 4.

5) 소결

오락, 교육, 연구, 종 보전 등 동물원의 기능으로 언급된 모든 사유들은 동물의 임모빌리티와 전시, 관람료를 통한 수익 구조가 주를 이루는 현재 동물원 시스템 하에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다만,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와 보존,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와 현재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의 거취 문제를 종합하여 볼 때 동물원에 대해서는 장·단기적, 종합적 정책이 요구됨. 즉,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동물원의 시설 개선, 동물복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인허가와 심사기준의 강화 등을, 장기적으로는 동물보호, 교육, 연구, 종 보전을 위한 핵심시설로서의 지배적 구조 변화, 보유 동물 제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III. 해외 사례

1. 일본의 동물원 법제와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의 활동

1) 일본의 동물원 법제

일본의 경우에는 동물원을 총괄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일본 「박물관법」 제2조에 따르면, 박물관이란 “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여 교육적 배려 하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러한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였지만, 「박물관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동물원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조항은 없음. 다만, 문부성 고시 제164호 「공립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동물원은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는 “자연계 박물관”의 일종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일본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 해당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한 뒤, 제6호에서 그러한 시설의 하나로 동물원을 언급하고 있음. 동법 제29조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령(政令)¹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도시공원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일본 대부분의 동물원은 이 법에 근거하여 공원시설로서의 지위를 가짐.

이 외에 동물원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말하는 “제1종 동물 취급업체”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전시 동물의 사육, 건강관리, 시설의 구조,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이 법은 모든 사육 동물에 대한 이념법으로서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전체 동물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동물원의 전시

18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정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명령’에 해당하며, 제정 주체는 내각이다.

동물을 특정하여 이에 관한 사육을 지도, 감시, 보호, 육성하는 시스템은 미약한 실정임.

요약컨대, 일본 법제에서는 독자적인 시설로서 동물원을 규율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이 박물관이나 도시공원 등의 주변 시설로 자리매김 하고 하고 있음. 즉, 동물원이 생명 있는 동물을 다루는 시설이 아니라 도시에 위치한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사람들이 여가를 보내는 장소로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시 동물의 복지, 환경보호에 기여도, 희소 종이나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한 제반 기준의 마련이 미흡하고, 동물원의 설치와 운영, 규제, 지도, 감독, 보호, 육성에 관한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¹⁹

2)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Japanese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JAZA)의 활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동물원과 전시 동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 동물원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옴. 여타의 동물원수족관협회와 마찬가지로 JAZA 역시 동물원의 기능을 오락-교육-연구-종 보전으로 대별하고 특히 네 번째 종 보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JAZA는 생물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적 연계를 요하는 보전사업이나 일본 내 희귀동물 및 외래종 대책에 관해 생태계 보전을 추진하는 사업, 희귀동물 혈통 등록을 통해 국내 각지의 동물원에서의 번식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추진함.

세계의 동물원수족관협회가 표방하는 종 보전의 기능은 윤리적 모순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원의 존립 근거로서의 종 보전과는 별개로 해당 사업은 환경과 생태계, 생물다양성의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일인 동시에 나아가 동물원의 진정한 기능적 전환을 위해 JAZA의 구체적 활동 내역을 참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JAZA는 일본 내 동물원과 수족관의 인원, 예산, 공간 등을 고려하여 어느 기관에서 어떤 동물 종을 얼마나 사육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체 계획을 세우고(JAZA Collection Plan), 해

19 打越綾子, 《日本の動物政策》, ナカニシヤ出版, 2019, 171頁.

달, 펭귄, 아시아코끼리, 코알라, 북극곰, 기린, 얼룩말 등 구체적인 종에 따라 부회(部會)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일본 내 동물원은 특정 종의 번식 활동과 서식지 보전 활동을 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에는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WAZA의 기조에 따라 2021년에는 동물의 복지 향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동물복지를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 이에 관한 공청회(2021년 12월 28일, 2022년 2월 21일) 및 영국의 동물복지 단체 Wild Welfare와 동물복지 기준의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함(2022년 1월 18일).²⁰

2. EU 동물원 지침

유럽 연합은 1999년 동물원 동물 관리에 관한 최소 기준지침²¹을 채택함으로써, 회원국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국내법으로 법제화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이 지침의 주요 목적은 야생 동물군을 보호하고 생물 종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용	관련 조항	세부 규정
동물원의 필요조건	Articl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보전 기술의 훈련, 종 보전 정보의 교환, 경우에 따른 포획 사육, 재증식, 야생으로의 방사에 관한 연구 참여 ■ 생물의 종 다양성 보전에 관한 대중교육 및 의식 제고 ■ 개별 종의 생물학적 보전 요건을 충족시키는 동물 관리, 특히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수준 높은 동물사육환경의 유지 ■ 토착종에 대한 생물학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탈출 및 외래종의 유입방지 ■ 보유종에 대한 최신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인허가 및 검사	Article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허가 및 검사를 위한 조치의 채택 ■ 인허가 이후 제3조에 따른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관할 당국이 인허가 조건의 충족을 위해 부과한 유예기간(2년 이내)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의 취소 및 해당 동물원의 폐쇄
동물원 폐원	Article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원 폐쇄시 동물 처분에 있어 당해 지침의 목적과 규정을 준수
벌칙	Article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침에 의거하여 채택된 국내법 규정의 위반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벌칙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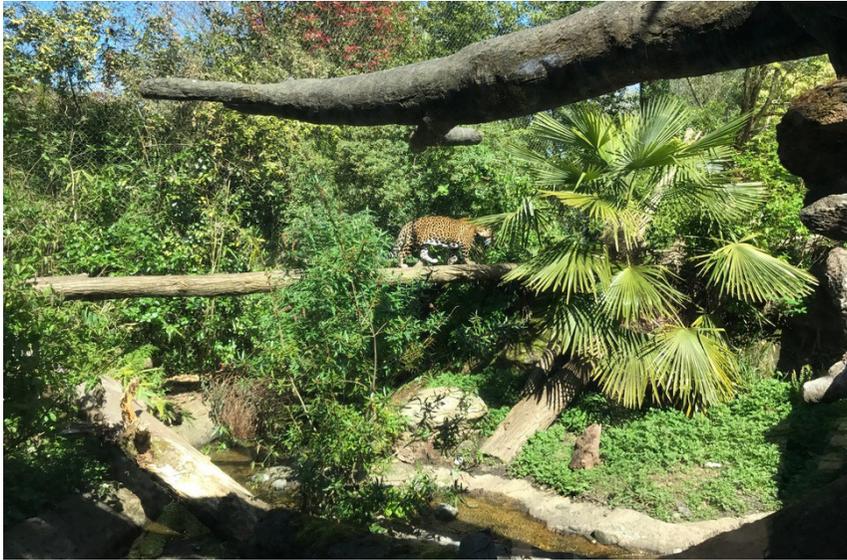
〈표 - 4〉 EU 지침 1999/22/EC 주요 내용

20 2021년 JAZA의 활동 내역에 관해서는 公益社団法人日本動物園水族館協会, 〈2021年度事業報告書〉 참조, https://www.jaza.jp/assets/document/about-jaza/document/2021/jigyou_ho_2021.pdf (2023. 1. 12. 최종방문).

21 Council Directive 1999/22/EC of 29 March 1999 relating to the keeping of wild animals in zoos.

3. 미국 시애틀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Woodland Park Zoo)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은 “경관몰입형” 전시를 최초로 도입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동물들의 본래 서식지의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을 관람하도록 하는 이 전시 기법은 미국과 유럽에 전파되어 동물에게 친화적인 동물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그림 - 4〉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 재규어 사육장
(출처: 한겨레신문)

해당 동물원은 여러 구역을 나누어 서식지의 기후와 환경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동물들의 행동풍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자의식이 있고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이 있는 코끼리가 사육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사육을 포기함으로써, 코끼리 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원이 증가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함.

4. 스웨덴 스킨 동물원과 노르덴스 아크 동물원

동물복지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은 동물보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동물복지법에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준수사항을 엄격하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법제 하에 스

웨덴 동물원의 보유 동물 대부분은 북유럽 토착 동물들로 본래의 서식지와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 스코네 동물원(Skånes Djurpark)

스코네 동물원은 스웨덴 남부 스코네 지역에 위치한 동물원으로 1953년 개원하였고, 본래 스칸디나비아를 서식지로 하는 동물들로 구성되어 있음. 동물원의 시설은 전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쳐 놓는 방식으로 본래 생태적 삶과 유사함.



〈그림 - 5〉 스코네 동물원 전경



〈그림 - 6〉 스코네 동물원 바다표범
(이상 출처: 스웨덴 Höör 관광 협회 블로그)

2) 노르덴스 아크 동물원(Nordens Ark)

노르덴스 아크 동물원은 스웨덴 Bohuslän 지방에 위치한 동물원으로 1989년 개원하였음. 동물원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재단이 설립한 동물원으로서, “북유럽의 방주”라는 의미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번식시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멸종의 위협에 놓인 동물 종들 중에서 자연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한 개체군을 확보하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해당 종의 번식, 교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물원 내 방목 동물들은 인근 숲 근처에서 18~19세기의 방목 풍경을 재현한 생태 공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동물원은 전통적인 노지 방목의 환경을 조성하여 방목 동물뿐 아니라 점차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곤충, 나비, 조류의 자연스러운 번성을 도모함.



〈그림 - 7〉 서식 환경과 유사한 초원에서의 방목 동물들
(출처: Nordens Ark 홈페이지)

해당 동물원은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에 대한 정보와 이와 같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종 보전을 위해 해당 동물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가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하게 공개하는 한편,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등 종 보전의 노력을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5. 영국 요크셔 야생동물공원(Yorkshire Wildlife Park)

영국 동커스터에 위치한 야생동물공원은 약 40헥타르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하여 영국 중부지방의 습지와 숲, 초원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음. 해당 동물원은 동물원의 임모빌리티를 강제하거나 전시하는 것이 아닌 야생에서의 모습 그대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60여 종에 해당하는 475마리의 동물들을 보유 중임.

특히 8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는 프로젝트 폴라(project polar)의 면적은 약 48,000m²에 이르고, 평원, 바위 해변, 호수, 동굴 등을 갖추어 북극 툰드라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해 두었음.



〈그림 - 8〉 프로젝트 폴러에서 생활하는 북극곰
(출처: Yorkshire Wildlife Park 홈페이지)

6. 오스트레일리아 테즈메이니아 데빌 언주(Tasmanian Devil Unzoo)

위 동물원들은 생활영역이 광활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들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동물 관람이 용이하지 않음. 이러한 전시 기법을 활용한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의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습성을 관찰할 가능성이 높고, 동물원이 관람의 목적이 아닌 생태의 장소로 전환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나, 보유 동물 본래의 서식지가 아니라 그와 흡사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서 동물이 야생에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내정하고 있음.

이에 야생의 동물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주시켜 전시하는 것이 아닌, 관람객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찾아가도록 하는 역발상적 동물원, 즉 “언주”(unzoo)가 설립됨. 데빌 언주는 대중이 자연 서식지와 상호작용하고 이에 몰입하면서 야생의 동식물과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표방하고 있음.



〈그림 - 9〉 태즈매니아 섬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위치한 인주 동물원
(출처: 한국일보)

태즈매니아 지역에 위치한 해당 동물원은 동물의 서식지 자체를 동물원으로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태즈매니안 데블, 캥거루, 왈라비 등 토종 서식 동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이 제약된 상태가 아닌, 서식지에서 야생 생활을 하는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음.

해당 동물원은 특히 멸종 위기에 놓인 태즈매니아 지역 야생동물인 태즈매니안 데블을 보호하고 야생복원 사업에 힘쓰고 있음. 1996년 감염병으로 개체 수의 대부분이 소실된 태즈매니안 데블의 건강한 개체를 확보한 후,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서식지 내에서 보전 작업에 힘써 종 보전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7. 시사점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해외 동물원들은 동물들의 활동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능한 한 서식지의 환경을 복원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음. 최근 동물원의 목적이 자 존립 근거로 추가된 “종의 보전”은 서식지 혹은 서식지와 유사하게 조성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또한 동물복지와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추세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동물 전시에서 탈피하여, 동물의 환경에 인간이 초대되는 형태의 전시 기법

이 추구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동물원에서는 동물의 관람이 용이하지 않으며, 관람객 역시 동물의 관람이 아닌 동물이 생활하는 환경과 습성 자체에 주목함으로써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일본의 예를 통해서는 종 보전 사업이 총괄 책임 기관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개별 동물원들의 예산, 인력, 규모, 종 보전의 필요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개별 동물원의 관련 노하우를 특화하거나 전문화하고 동물원 전체의 기능 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IV. 대안과 정책 제언

1. 동물원의 폐지인가 보존인가

현재 우리나라 다수의 동물원과 같이 서로 서식지를 달리하는 야생동물의 백화점식 전시 형태를 유지하는 한, 동물원의 기능과 목적의 새로운 설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움. 그러나 동물원이 보유 중인 야생동물은 본래의 서식지가 아닌 동물원에서 태어나거나, 다른 동물원과 교환의 방식으로 유입되어 야생으로의 회귀가 오히려 부적합한 경우가 다수임. 또한 서식지 자체를 이미 상실한 경우와 동물원에서 태어나 고령에 이른 야생동물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물원의 향방은 윤리와 현실적 필요성의 간극을 좁히며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존하는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동물원이 동물의 보호와 종의 보전, 환경 교육의 장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동물보호와 헌법 규범

2017년 「동물원수족관법」의 제정은 동물복지에 있어 척박한 환경에 놓인 국내 동물원의 현실에 비추어 전시 동물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나아가 동물원·수족관을 박물관이나 공원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시설의 지위에 두고 이를 통괄하는 법률을 마련한 국가는 비교법적으로도 드문 일로서,²² 특히 제정 이후 곧바로 이어진 개정 운동과 그 성과는 제정법보다 진일보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측면

22 비교법적으로 영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같은 입법 형태가 아니라, 동물복지법(미국, 뉴질랜드)이나 민법(스위스), 연방 자연보호법(독일), 동물보호법(오스트리아), 박물관법 및 도시공원법(일본) 등에 동물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에서 볼 때 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은 우리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음.²³ 이에 입법자들의 의지에 따라 변경·폐지가 가능한 법률의 단계가 아닌, 유권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규범화가 필요함. 헌법적 차원의 동물보호·복지 규정을 두는 것은 서로 다른 헌법상 권리가 충돌할 때에 동물에 대한 처우가 다른 권리들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심사되어야 함을 의미함. 또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과 동물복지·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과정에서 합법성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와 검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관행과 정책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²⁴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의 가치를 헌법에 수용할 때 인간을 중심으로 한 환경 보호의 측면인가, 동물의 존엄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종 보전과 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함.

3. 전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 조항의 정비

앞서 사례로 든 대구 소재 동물원에서의 동물 방치가 동물의 폐사로 이어진 사건에서, 동물원 운영자는 「동물보호법」,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상의 동물학대 혐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동물원에 대해서는 양벌규정²⁵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데 그쳤음. 「동물보호법」,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등에 규정된 학대행위와 처벌은 다음과 같음.

23 김서영, 〈동물학대죄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강원법학》 63, 2021, 415쪽.

24 Bolliger, Gieri,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Aspects of Animal Welfare in Europe," Stiftung für das Tier im Recht, https://www.tierimrecht.org/documents/1358/Abstract_Bruessel_TIR_Papier.pdf (2023. 1. 25. 최종방문).

25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개인(자연인)외에 그 개인이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법률	금지행위	벌칙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개정) 동물원수족관법 ²⁶	제15조(금지행위)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2.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제30조(벌칙) ①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야생동물법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표-5〉 동물 학대에 관한 법률²⁷(일부 발췌)

우선 「동물원수족관법」은 학대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야생동물법」에서 말하는 “야생동물”로 한정하고 있는데, 야생동물에 대하여 고의로 먹이 등을 급여하지 않아서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동물법」 양법에서는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동물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종류의 학대행위에 대하여 역시 같은 법정

26 위에서 거론된 세 가지의 법률 중에서 「동물원수족관법」의 경우는 최근 개정에 따라 학대행위에 관한 조항에 변화가 있어 향후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을 소개한다.

27 대구 동물원 사례 중 동물들에게 먹이를 공급하지 않아 폐사시키거나 굶주림을 방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형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법체계에 따르면 ① 동물원이 보유한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는 「동물원수족관법」이 적용되고, ② 동물원이 보유했지만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에 대한 학대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며, ③ 야생동물 여하 및 동물원 보유 여하와 상관없이 동물에게 고의로 먹이 등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법에 따르든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됨. 그러나 동물원이 보유하는 동물은 야생동물에 한하지 않기 때문에 다종의 동물을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해당 동물의 전 생애에 걸쳐 그 운명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동물원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학대행위의 불법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는 점, 그리고 피해 규모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동물원수족관법」은 학대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동물을 “보유 동물”로 확대하고, 처벌의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동물원수족관법」에 준용되는 「야생생물법」상의 학대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외가 인정됨.

1항	2항
<p>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p>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표-6〉 「야생생물법」 제8조

“정당한 사유”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을 조각시켜 가벌성을 배제하는 법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사유임. 그러나 위에서 나타나는 행위 유형, 즉 때리거나, 산 채로 태우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사유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예를 상상하기 어려움. 설령 사람에게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

응상황을 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히 그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구비된 동물원·수족관에서 그 정당성 여지는 극히 희소함. 따라서 「동물원수족관법」은 학대행위의 유형과 그 예외의 인정을 「야생생물법」에서 차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학대행위의 유형을 설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의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 요청됨.

4. 동물원 환경의 제고를 위한 종별 기준 제시

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법률의 단계에서 동물원의 운영 원칙, 준수사항, 벌칙 등의 일반적 내용을 정하는 외에 하위 법령을 통하여 동물사육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²⁸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등록제로 운영되는 현행법상 동물원을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동물원수족관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전시·사육시설이나 사육환경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야생생물법시행규칙」 [별표 5의2]는 종에 따라 개별적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제한되어 있어서, 동물원에서의 사육 적합성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코끼리를 비롯하여 늑대, 여우 등의 야생동물이 누락되어 있음. 아울러 설치기준 역시 사자, 호랑이, 재규어, 표범, 설표의 경우는 넓이 14㎡, 높이 2.5m, 스라소니, 퓨마의 경우는 넓이 8㎡ 안팎, 높이 2m, 남아프리카 물개의 경우 육상은 넓이 3.5㎡, 수영장은 14㎡, 깊이 1.5m 이상으로 동물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규모와는 거리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제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따라서 개정법에 따른 시행령은 동물원의 보유동물을 종별로 구분하여 서식 환경 기준을 제공하되, 실제로 동물의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하고 면

28 함태성, 앞의 글, 454쪽.

적뿐 아니라 사육시설의 구조, 행동 풍부화 시설 기준 등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비교법적으로 동물의 종에 따라 특화된 요건, 즉 ① 수영, 기어오르기, 그루밍 등 개별 활동을 위한 요건, ② 크기와 성별의 비율, 어울림, 서열 등을 고려한 집단적 활동을 위한 요건, ③ 움직임, 은신처, 영역 등을 고려한 물리적 요건, ④ 지능, 소심함, 공격성 등을 고려한 심리적 요건 등을 규정한 뉴질랜드 전시동물복지법 규칙(Animal Welfare(Zoos) Code of Welfare 2004)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5. 동물원 기능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

1) 시설별 전문성 특화

미래의 동물원이 기능의 전환을 통하여 존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물을 백화점 식으로 수집, 전시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개별 동물원마다 기능의 특화를 통하여 교육, 연구, 종 보전 기관으로 전문화되어야 함. 놀이시설과 연계성 여부, 동물원이 소재한 위치, 동물원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교육 또는 종 보전 시설로의 기능적 특화를 도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축적된 사육이나 번식 노하우에 따라 보유 종을 한정하거나, 야생동물 서식지와 인접한 동물원에서는 해당 동물을 중심으로 교육이나 종 보전 사업에 집중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육이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의 보유를 과감히 포기할 필요가 있음.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에 대하여 시행령을 통해 보유 금지 동물을 정하도록 하는데(제15조 제2항), 그 첫 대상 동물로 고래류 규정이 예정되어 있음.²⁹ 그러나 이 외에도 예컨대 활동 영역이 방대한 북극곰, 사자 등이나 무리를 짓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코끼리, 유인원 등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9 환경부 보도자료,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2년 11월 24일.

2) 종 보전, 통합적 프로젝트로서의 접근

동물원의 기능 중 하나로 언급되는 “종 보전”은 증식된 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지의 복원(또는 보전) + 밀렵, 서식지 훼손 등으로부터의 제도적 보호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 환경, 법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프로젝트로서의 접근이 요구됨. 이러한 통합적 설계가 결여된 개체의 번식은 또다시 전시 동물의 증가와 동물복지의 저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도태 등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종 보전의 기능은 개별 동물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관계 기관에서 로드맵을 설정하여 연구기관, 동물원, 지역사회, 관계 부처가 연계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함.

환경부는 이러한 통합적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번식 협력 프로그램과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지가 된 야생으로의 방사에 관한 내용은 충분치 못한 상황임. 이에 번식과 개체 증식 이후의 과정을 포함한 거시적 관점의 계획 수립이 요구됨.

또한 종의 보전이나 번식 역시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종의 보전은 동물의 복지보다 우월한 가치일 수 없고, 번식 프로그램에 적용될 개별 개체의 복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번식 개체의 선정, 이동, 번식의 과정, 번식 후의 처우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3) 체험 프로그램의 대안 개발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보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을 금지하고 있음(제15조 제1항 제4호). 가장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동물원의 서식지로 확대, 관련 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야생 둘러보내기 행사”,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 등으로 대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적 기능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서영, <동물학대죄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강원법학》 63, 2021, 385~422쪽.
-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2020.
- 유선봉, <동물권 논쟁: 철학적, 법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0(2), 2008, 435~468쪽.
- 최훈, 《동물을 위한 윤리학》, 사월의책, 2015.
- 함태성, <동물 전시의 윤리적·법적 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스와질랜드 일레븐 사건(Born Free USA v. Norton case)을 글감으로 하여->, 《환경법연구》 39(3), 2017, 439~473쪽.
- 橋川央著, 打越綾子編, <動物園動物の存在と動物園がやっていること>, 《人と動物の關係を考える》, ナカニツヤ出版, 2018.
- 打越綾子, 《日本の動物政策》, ナカニシヤ出版, 2019.
- Miranda, Rafael, et al., “The Role of Zoos and Aquariums in a Changing World,” *Annual Review of Animal Biosciences* 11, 2023, 287-306.
- Regan, Tom, *The Case for Animal Rights*,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2. 기타 자료

- 김지숙, <‘학대’ 체험 동물원 넘어갈 위기, 침팬지 광복·관순이 ‘반출 철회’>, 한겨레신문, 2022. 8. 11.
-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서울시 야생동물 전시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2020.
- _____, <[성명서] 쇼핑몰 실내체험동물원으로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양도한 서울대공원에 동물 회수와 공영동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2020.
- 서울대공원, <교육 프로그램>,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https://grandpark.seoul.go.kr/edu/program/list/ko/S001005001002.do> (2023. 1. 11. 최종방문).
- 환경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15)>, 2020.
- 환경부 보도자료,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2년 11월 24일.
- 公益社団法人日本動物園水族館協会, <2021年度事業報告書>, https://www.jaza.jp/assets/document/about-jaza/document/2021/jigyou_ho_2021.pdf (2023. 1. 12. 최종방문).
- Bolliger, Gieri,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Aspects of Animal Welfare in Europe,”

Stiftung für das Tier im Recht, https://www.tierimrecht.org/documents/1358/Abstract_Bruessel_TIR_Papier.pdf (2023. 1. 25. 최종방문).

Dickie, Lesley, “Why Copenhagen zoo was right to cull giraffe,” CNN, 2014. 2. 10. <https://edition.cnn.com/2014/02/10/opinion/giraffe-cull-argument-for/index.html> (2023. 1. 9. 최종방문).